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100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정승환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9. 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71,017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71,0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저축은행은 C에게 2002년경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파산자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13. 12. 20.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쳤다.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2. 3. 14.부터 2017. 4. 17.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 1. 23.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합계 9,971,017원이다.

나. E이 2021. 9. 4. 사망하여, 배우자 F이 3/13, 자녀인 피고, C, G, H, I가 각 2/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E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C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C은 2020. 6. 4. 보험금으로 288,229,501원을, 2021. 10. 22. 15,084,241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내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2.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C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는 C이 2020. 6.경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가 사해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명한다.

사해행위는 공동담보가액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22,898,400원(갑 제4호증) 중 C 지분에 해당하는 34,292,061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C 지분 해당액인 18,461,538원을 공제한 15,830,523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 9,971,017원 중 적은 금액인 9,971,017원의 범위에서 성립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금액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9,971,0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진희

별지